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
사무전결처리 규정

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사무전결처리 규정

제정 2021년 12월 6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체육회(이하“체육회”라 한다) ‘사무국 운영규정’ 제5장 사무관리 제25조(결재)에 의거 체육회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철저한 이행과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① 체육회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다른 별도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②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결재는 [별표 제1호] 의 구분에 의한다.

제3조(전결, 대결, 후결) ① 회장은 사무내용에 따라 그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.
② 결재권자가 출장, 휴가,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.
③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전결사항의 특례) ① 위임전결사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1.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
2. 그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일 경우
3.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② 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책임)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.

제6조(합의사항) 중요한 사항으로서 타 기관 및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합의 협조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(처리사항의 보고)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그 요지를 작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(2021. 12. 6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제1호]

사 무 전 결 처 리 사 항 (제2조제2항 관련)

연번	단 위 업 무	세 부 업 무	국장전결	회장결재
1	법인등기 등에 관한 사항	①명칭, 사업목적, 소재지 및 대표자주소 등 변경		○
		②임원변경(퇴임,사임 및 취임,중임 등) 등 등기		○
		③기본재산 등 변경		○
		④고유번호(사업자등록증 등)변경		○
2	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·평가	①기본계획 수립		○
		②세부추진계획 수립	○	
		③계획의 시행	○	
		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○	
3	영도구체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	①기본계획 수립		○
		②세부추진계획 수립	○	
		③기본제도개선 사항		○
		④세부제도개선 사항	○	
		⑤제도개선 실시 및 평가	○	
4	정관 변경 및 각종 규정의 제·개정 등 사전심의에 과한 사항	①정관의 변경 심의사항 보고		○
		②각종 규정의 제·개정 심의사항 보고		○
5	예산편성,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	①세입세출예산안 편성		○
		②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 수립	○	
		③예산의 변경		○
		④예산의 조정 및 통제	○	
		⑤예산의 집행	○	
		⑥급여 등 법령·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지출 등	○	
		⑦추정금액 1천만원이하의 공사, 용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, 수리 또는 제조 등		○
		⑧결산서 작성		○
		⑨보조금교부 요청 및 정산보고	○	
6	각종 수익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		○
		②세부추진계획 수립	○	
		③계획의 시행	○	
		④사후관리	○	

연번	단 위 업 무	세 부 업 무	국장전결	회장결재
7	조직운영에 관한 사항	①업무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		○
		②각종 지시사항의 종합 및 이행 실태	○	
		③각종 제안제도의 운영	○	
8	각종회의에 관한 사항	①대의원 총회		
		- 기본계획 수립		○
		- 계획의 시행	○	
		②이사회		
		- 기본계획 수립		○
		- 계획의 시행	○	
		③회장단 회의		
		- 기본계획 수립		○
		- 계획의 시행	○	
		④위원회 회의		
		- 기본계획 수립		○
		- 계획의 시행	○	
9	감사 및 보안에 관한 사항	①타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		○
		②자체 감사업무		
		- 기본계획 수립		○
		- 계획의 시행	○	
		③비밀문건의 취급 및 관리	○	
10	직원인사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	①사무국장 임면		○
		②직원의 임면		○
		③인사기록 관리	○	
		④직원의 상벌		○
		⑤직원의 휴가계획 수립, 시행	○	
		⑥직원의 근태 관리	○	
		⑦직원연수에 관한 사항	○	
		⑧기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	○	
11	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	①급여 조정		○
		②급여 및 퇴직금 지급	○	
		③퇴직급여충당기금의 운용 관리	○	

연번	단 위 업 무	세 부 업 무	국장전결	회장결재
12	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	①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관리	○	
		②재해보상 관리	○	
		③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	○	
13	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	①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		○
		②재산의 총괄 관리	○	
		③정기재물조사 실시 및 관리	○	
		④차량관리 및 운영	○	
14	회비관리에 관한 사항	①회비 운영계획 수립		○
		②재산의 총괄 관리	○	
		③정기재물조사 실시 및 관리	○	
15	세무업무에 관한 사항	①각종 세금 원천징수 및 납부	○	
		②기타 세무	○	
16	차량운행 관리에 관한 사항	①운행계획	○	
		②운행관리	○	
		③운전원 복무관리	○	
17	일반서무에 관한 사항	①제 증명서 발급	○	
		②문서의 통제, 분류, 관리	○	
		③사무용품의 수발	○	
		④통신시설의 운용	○	
		⑤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	○	
		⑥문서의 수발, 보존	○	
		⑦업무 인계인수서 관리	○	
18	회원종목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	①회원단체 가입·탈퇴에 관한 사항		○
		②총회 등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	○	
		③회장선거에 관한 사항	○	
		④각종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	○	
		⑤임원인준에 관한사항	○	
		⑥기타 회원단체에 관한 사항	○	
19	회원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연임 심의에 관한 사항	①기본계획 수립		○
		②계획의 시행	○	

연번	단 위 업 무	세 부 업 무	국장전결	회장결재
20	각종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	①기본계획수립		○
		②세부추진계획 수립	○	
		③계획의 시행	○	
		④추진결과의 심사, 분석, 평가		○
21	상벌에 관한 사항	①영도구체육상 시상		
		- 기본계획 수립		○
		- 심사 및 표창	○	
		②정부기관 및 대한체육회 표창		○
		③임·직원, 선수의 상벌 보고		○
22	민원 및 비위에 관한 사항	①종목단체 민원 처리	○	
		②종목단체 비위사항 처리	○	
23	클럽 운영 기본계획 수립	①기본계획 수립	○	
		②계획의 시행	○	
25	교육프로그램 작성	①스포츠클럽 구성	○	
		②계획의 시행	○	
26	홈페이지운영에 관한 사항	①자료 구축 및 관리 전반	○	